

고성군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071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3. 13.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2026. 3. 13.

다. 상정·의결일자: 2026. 3. 25.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교육청소년과장 이소영)

가. 제정이유

고성군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조례의 목적과 정의, 평생학습관의 기능 등(안 제1조~제5조)
- 2) 시설 사용 승인과 취소 등(안 제6조 및 제7조)
- 3) 사용료 및 수강료 등(안 제8조~제10조)
- 4) 강사 위촉 및 해촉(안 제11조 및 제12조)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제21조
- 2)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3) 합 의
 - 복지지원과(여성친화담당):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반영[복지지원과-3621(2026. 1. 20.)호]
- 4) 기 타

-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6-134호
 - . 예고기간: 2026. 1. 20.~2026. 2. 10.(21일간)
 - . 예고결과: 의견없음
-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허수은)

가. 주요 검토내용

- (안 제1조~제4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학습관의 기능을 정책 개발,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대상 학습, 기관·단체 협력, 평생교육 종사자 교육, 학습 동아리 지원, 읍·면 평생학습센터 지원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5조~제7조) 학습관의 운영 주체와 위탁 가능성을 명시하고, 시설 사용 신청·허가, 사용료 납부, 사용 제한 및 허가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8조~제10조, 별표 1·2)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과 반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이용 편의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1조~제12조) 학습관 프로그램 강사 위촉과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태만 등 사유 발생 시 해촉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사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됨.
- (부칙) 시행일과 기존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 삭제 사항을 명시하여 중복 규정을 정리하고 조례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나. 종합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 활성화 목적에 부합하며, 평생 학습관 운영 전반과 관련한 사항을 상위법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문제나 시행상의 특별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6. 3. 25.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